

의정부지방법원 2022. 6. 14 선고 2020가단13877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철우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

담당변호사 문계정, 최덕순, 박원준

변 론 종 결 2022. 5. 10.

판 결 선 고 2022. 6. 14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16. 12. 20. 체결된 매매계약을 93,305,4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93,305,4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4. 10. 18. C의 작업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D 건물 내 사무실 철거공사를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를 당하였고, 그 사고와 관련하여 C에 대하여 98,287,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0. 18.부터 2017. 5. 1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.

C은 2016. 12. 20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매도하고,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6. 12. 30. 접수 제309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C은 무자력이 되었고, 이는 C의 책임 재산을 없앴으로써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이다.

따라서 C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그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(안분한 금액)을 차감한 93,305,408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93,305,408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.

2.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.

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,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(대법원 2005. 6.

9.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).

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, 갑 제3, 5, 6호증, 을 제4 내지 1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① 원고는 2014. 10. 18.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15. 9. 23. 의정부지방법원

2015가단119024호로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, 피고 및 E에 대하여는 “C이 2015. 4. 14. 피고 및 E와 사이에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기 가평군 F 임야 70,941㎡ 중 각 1/2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,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5. 4. 15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, 그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”고 주장하면서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예약의 취소 및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(이하 ‘선행 관련소송’이라 한다).

② 위 법원은 2017. 5. 17.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, 피고 및 E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위 임야가 C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고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C이 무자력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및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.

③ 원고는 위 판결 중 피고 및 E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6848호로 항소를 하였고, 그 소송 계속 중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으로 경기 가평군 G 임야 16,495㎡를 추가하였다. 위 항소심 법원은 추가 심리를 거친 후 2019. 7. 11. “C이 위 각 임야에 관한 2015. 4. 14.자 매매예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, 그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되며,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”는 이유로, 위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및 E에 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그 판결은 2019. 7. 31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④ 원고는 선행 관련소송의 1심 계속 중인 2015. 12. 31.경 피고가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증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송달받아 그 각 부동산을 C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,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8. 3. 15.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함으로써 C이 2016. 12. 20.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.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선행 관련소송에서 “C과 피고 사이에 C이 소유하던 임야에 관한 2015. 4. 14.자 매매예약 체결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, 그 재산처분 행위인

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되며,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”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2019. 7.

31.경에는, C의 또 다른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. 12.

20.자 매매계약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.

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2019. 7. 31.부터 1년이 경과한 2020. 10. 30. 제기되었으므로,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,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손태원

별지

목 록

1. 경기도 가평군 대 318㎡

2. 경기도 가평군 [도로명주소 : 경기도 가평군

] 지상

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(경량철골구조) 2층 단독주택

1층 36.4㎡

2층 20.02㎡,괄.

1) 선행 관련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동일한 변호사이다.